

<p>에게 지급하는 각종 겸임수당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써 겸임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, 동 규정을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.</p> <p>4. 근 거 가. 지방자치법 제15조 나.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</p> <p>5. 검토의견 ○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1987. 9. 25 조례 제2215호로 제정되었고, 그 조례는 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1조 목적과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제3조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, ○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 겸임수당에 의거 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직에 겸임되는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겸임수당의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상위 법령에 위임된 근거규정을 정확히 밝히, 규칙으로 제정, 단력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, 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 ○ 다만, 조례폐지와 규칙제정 시기를 일치시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특별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사료됨.</p> <p>.....</p> <p>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는 먼저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</p>	<p>바랍니다.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고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放送通信高等學校手當支給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조례 제2215호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4.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 (15時)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中等教育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.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 廢止理由는 本 條例는 서울特別市 中·高等學校入學對象者 中 특출한 才質은 있으나 學費負擔이 어려운 者에게 獎學金을 支給하기 위하여 그 資格의 要件과 選定, 支給方法을 規定하는 것으로 公·私立 中·高等學校의 學生의 獎學金에 關한 事項은 獎學金施行規則 第</p>
---	---